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강태원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충청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임기 : 2년, 연임가능

나. 홍보대사 보상 : 무보수 명예직, 필요경비 지급

다. 홍보대사 총괄운영부서 지정 : 공보관실

라.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 경제적·문화적 가치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 사임의사표시, 홍보대사활동 기피
-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할 때

4.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안은 강태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충청북도정을 국내외

로 홍보하는 홍보대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를 대표하여 도의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등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위촉요건을 인지도 높은 유명인 및 전문가로 하고,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홍보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 보상방법 등을 명료하게 정하는 것임.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자치단체의 브랜드가 중요한 홍보요소가 되고 있으며, 도정을 국내외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의 홍보 대사 운영보다는 충청북도의 브랜드와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대사를 지정운영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내용에 다른 의견은 없으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